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가로수 관련 행위 등에 관한 계획은 도시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도시숲법」에서는 특별시나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2025. 3. 6.)된 것임.
- 조례 제정 이전에도 영등포구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최근 수립연도는 2021년 6월임.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행정계획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임.
- 한편,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도지사·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동 조항의 취지는 “도시숲등에 관한 계획이 도시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나 ‘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수립·시행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는 조문 제목을 기준 “가로수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함. 대신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서울 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함.

- 그 밖에 별표(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별지 제1호서식(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신청서) 및 제2호서식(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서) 신설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가로수 관련 기본계획을 특별시 또는 시 단위에서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구 단위에서는 서울시의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통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0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의자: 이순우·최인순·이규선정선희 의원(4인)

1. 제안이유

가로수 관련 행위 등에 관한 계획은 도시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도시숲법」에서는 특별시나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구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나.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설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제목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p>△ 피 해 발 생 의 경 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퍼센트 + 실작업비
<p>△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구청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구청장이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옮겨심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하는 경우 : 구청장의 승인 및 감독 ※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구청장이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서울특별시 조경수 가격 및 가격정보지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 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하자책임 담보기간(2년간) 동안 세외수입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보증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심고 가꾸기 <input type="checkbox"/> 옮겨심기 <input type="checkbox"/> 가로수 승인서 <input type="checkbox"/> 제거 <input type="checkbox"/> 가지치기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	수량	분
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원인자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